

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
조례안 검토보고서



2021. 03. 16.
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
복지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회부경위

본 제정조례안은 2021. 03. 02. 임준희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, 2021. 03. 04.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(의안번호 제2576호).

2. 제안이유

의류수거함의 설치·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 ~ 제4조).
- 다.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및 운영·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(안 제6조 ~ 제8조).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
-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 제3조,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.

다. 관련부서 검토의견 :

라. 기타

1) 제정안 : 별 첨

2) 조례안 예고 : 2021. 3. 5. ~ 2021. 3. 9.

5. 검토의견(전문위원 신훈)

- 도로변 및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설치·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 하고자 함.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의류의 재활용 촉진 및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를 위한 구청장,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,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.
 - 안 제5조에서는 의류수거함의 규격·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효율적인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하여 운영·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운영·관리자로서의 업무 및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함.
 - 안 제9조는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- 의류의 재활용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재활용하기 시작 하였으며, 초기에는 의류를 비닐봉지에 담아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하다가 점차 전용수거함 형태로 발전하였으나, 시간이 지나면서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불법적으로 의류수거함이 생겨남.

- 양천구 또한 초기에 개인 및 단체에서 무분별 하게 설치하였으며, 다양한 형태의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, 개인 및 단체의

경쟁으로 중복 설치, 주민통행 불편, 수거함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.

- 양천구청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하여 의류수거함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류수거함을 정비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, 또한 2016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의류수거함 설치·운영기준 마련,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 선정 등을 권고함.
- 본 조례안은 의류수거함 설치·운영·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촉진을 도모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 할 것이라 사료됨.

참고사항

1. 양천구 관내 의류수거함 운영현황

행정동	개수	위탁단체
목1	8	지체장애인협회 양천지회
목2	107	
목3	46	
목4	58	
소 계	219	
신월1	40	고엽제전우회 양천지회
신월2	49	
신월3	36	
신월4	73	
신월5	46	
신월6	13	
신월7	80	
소 계	337	
신정1	20	서울시 재활용의류협동조합 양천지사
신정2	20	
신정3	40	
신정4	133	
신정7	9	
소 계	222	
총 계	778	

2. 의류수거함 위탁업체

- 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: 2015년 9월
- 의류수거함 위탁 운영 : 2015년 11월 ~ 2018년 11월
 - 고엽제전우회, 재활용의류협동조합, 지체장애인협회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(2016. 7. 27.) : 의류수거함 설치·운영기준 마련, 공개 경쟁을 통한 업체선정 등에 대한 권고
- 위탁협약 연장(재계약) : 2018. 12. 1 ~ 2021. 12. 31.

관계법령

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제13조(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)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·보관·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(公表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. 21.>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. 21.>

[전문개정 2008. 3. 21.]

□ 폐기물관리법

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공원·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·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07. 8. 3., 2013. 7. 16., 2021. 1. 5.>

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 8.

3., 2013. 7. 16.>

③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8. 3., 2013. 7. 16.>

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

제3조(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)

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·군·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,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.

제6조(분리수거용기의 설치·관리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·보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품목·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, 배출품목·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배출에 적합한 전용봉투, 유리병 전용봉투, 전용그물망 등 지역여건에 알맞은 통합 전용용기를 선택하여 보급할 수 있다